

-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 대상 운반서비스 운영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 영농편의 제공으로 적기 영농에 따른 농작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에 따른 용어 현행화(안 제1조 ~ 제12조, 안 제14조 ~ 제18조, 안 제20조 ~ 제24조)
 - (현행) 농기계 → (개정) 농업기계
- 나. 운반서비스 용어 정의 신설(안 제3조 제8호)
- 다. ‘만 나이’ 통일법 시행에 따른 나이 표현 정비(안 제8조 제5항)
- 라.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 대상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운영 근거 조항 신설(안 제9조)
- 마. 준용 규정 제명 현행화(안 제10조 제3항)
 - (현행) 「예산군 재무회계 규칙」
 - (개정) 「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- 바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(안 제10조 제2항, 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【붙임 1】

-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 제3조 및 제8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 : 2023. 10. 30. ~ 2023. 11. 18.[20일간]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【붙임 2】

4) 성별영향평가 : 【붙임 3】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인 대상 운반서비스 운영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 영농편의 제공과 농작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농업기계를 임대 시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하여 주는 서비스 조항을 추가하여 지원함으로써 적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
- 관계 법령에 위배 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